

#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 활동상황

1992. 8. 27

의사국 위원과

1402

~~38~~ //

정치관계법 심의특별위원회 현황

1992. 8. 27 현재

구 분	회의회수	구 성 위 원	비 고 (회의실)
전 체 회 의	2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18인 (민자 9, 민주 6, 국민 3)</li> <li>- 위원장 : 신상식 위원(민자)</li> <li>- 간 사 : 김종위 위원(민자) 박상천 위원(민주) 정장현 위원(국민)</li> </ul>	501 호 (동자위 회의실)
심 의	지방자치법등 개정심의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신상식, 정시채, 강용식 (민자)</li> <li>김봉호, 홍사덕 (민주)</li> <li>윤영탁 (국민)</li> </ul>	532 호
	대통령선거법등 개정심의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이인제, 최재욱, 황윤기 (민자)</li> <li>조순형, 박상천 (민주)</li> <li>김진영 (국민)</li> </ul>	535 호
반	정치자금법등 개정심의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김종위, 김영진, 강재섭 (민자)</li> <li>김덕규, 신기하 (민주)</li> <li>정장현 (국민)</li> </ul>	506 호

# 1. 전체회의

차수	일 자	회 의 경 과	비고
1	8. 17 (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위원장 및 간사선임</li> <li>- 위원장 : 신상식 위원 (민자)</li> <li>- 간 사 : 김중위 위원 (민자)</li> <li style="padding-left: 2em;">박상천 위원 (민주)</li> <li style="padding-left: 2em;">정장현 위원 (국민)</li> </ul>	
2	8. 18 (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위원회 운영에 관한 건</li> <li>- 3당 대표합의사항을 기본바탕으로 법안을 성안기로 함</li> <li>- 3개법등 개정심의반 구성</li> <li>- 전체회의 및 심의반은 전원 합의제로 운영기로 함</li> <li>- 심의반의 1차 활동시한은 8월말 까지로 함</li> <li>- 심의반은 매일 오전 10:00 에 개최하되, 사회는 위원순차로 하기로 함</li> </ul>	

5

## 2. 개정심의반 회의

### 가. 지방자치법등 개정심의반

차수	일자	회 의 경 과	비고
1	8.18 (화)	○ 심의반 운영의 건 ( 합의사항 없음 )	
2	8.19 (수)	○ 자치단체장 선거실시 시기 - 민자당 입장 : '95. 6.30 일 이내 - 민주당 입장 : 하나는 대선과 동시, 나머지는 '93년 상반기중 - 국민당 입장 : 기초자치단체장선거를 먼저 10월 중순까 지, 불가능하면 대선과 동시  ※ 민주당이 공청회 및 TV토론회 개최를 제의하여 다시 논의기로 함	
3	8.20 (목)	○ 자치단체장 선거 실시시기 문제에 대한 각당의 기존입장 을 재확인	
4	8.21 (금)	”	
5	8.24 (월)	”	
6	8.25 (화)	”	
7	8.27 (목)	”	

## 나. 대통령선거법등 개정심의반

차수	일자	회 의 경 과	비 고
1	8.18 (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각당의 시안이 마련될 때까지 「선거관리위원회 개정 의견」을 중심으로 검토하기로 함</li> </ul>	
2	8.19 (수)	<p>&lt; 합의사항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선거사범의 벌금형량 "5만원" 을 "100만원"으로 상향조정</li> <li>○ 후보기탁금 "무소속 1억원, 정당추천 5천만원"을 구별없이 "3억원"으로 상향조정</li> <li>○ 선거인 명부 작성시 입회인을 읍.면 단위로 후보자별 1인을 허용하여 감독강화</li> <li>○ 후보자의 사퇴신고를 현행 "선관위에 서면신고"를 "본인이 직접 중앙선관위에 출석하여 서면 신고"토록 함</li> </ul>	
3	8.20 (목)	<p>&lt; 합의사항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선거운동기간은 현행대로 "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" 로 함</li> <li>○ "선거사무원" 을 "선거운동원" 으로 명칭 변경</li> <li>○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제한 완화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·형제자매(배우자 포함)는 선거운동 가능</li> <li>- 국회의원의 보좌관, 비서관은 선거운동원으로 신고한 후 선거운동원이 될 수 있도록 함</li> </ul> </li> </ul>	

차수	일자	회 의 경 과	비 고
4	8.21 (금)	<p>&lt; 합의사항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연설회 회수는 현행 "후보자연설회는 시.도별로 3회이내 연설회는 읍.면.동마다 1회이내" 를 "후보자 연설회와 연설회를 합하여 개표구마다 5회 이내" 로 축소함</li> <li>○ 고지벽보 연설회 1회에 "100매" 를 "200매" 로 확대</li> <li>○ 정견.정책집 발행.배부 (신설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정견정책집을 16절 70면이내에서 총세대수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부수이내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함</li> </ul> </li> <li>○ 소형인쇄물 작성.배부 (신설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소형인쇄물을 16절, 20면이내의 3가지를 총유권자수의 10분의 1의 범위내에서 발행하고, 8절, 2면이내의 1가지를 총유권자수의 5분의 1의 범위내에서 발행 할 수 있도록 하였고, 이는 호별방문에 의하여 배부할 수 있도록 함</li> </ul> </li> <li>○ 선전현판과 홍보용게시판 (신설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선거사무소·연락소에 선전현판을, 선거사무소·연락소의 입구 또는 10m 거리안에 홍보용 게시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</li> </ul> </li> <li>○ 공개된 장소에서의 개별면접을 통한 정당 및 후보자 지지 호소 허용</li> <li>○ 유선방송을 이용한 정견발표 허용</li> <li>○ 일간신문을 통한 정견.정책광고를 5회 이내로 허용</li> </ul>	

차수	일자	회의경과	비고
5	8.22 (토)	<p>&lt; 합의사항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선거사무소의 유사기관 설치금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금지대상에 "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" 을 추가</li> </ul> </li> <li>○ 무소속 후보자의 정당 표방 금지</li> <li>○ 허위논평·보도의 금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현행 허위사실 보도, 사실의 왜곡보도, 논평금지 규정에 "선거운동에 있어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, 반대하거나 논평을 하는 행위의 금지" 규정을 추가</li> </ul> </li> <li>○ 탈법방지를 위한 저술등의 금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선거운동 기간중 정당, 후보자를 지지·추천·반대하는 내용이 일부라도 포함된 저술·연예·영화·광고·사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법적이외의 방법으로 배부·상연·게시할 수 없도록 함.</li> </ul> </li> </ul>	
6	8.24 (월)	<p>&lt; 합의사항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타연설회의 개최금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중에 법정연설회 이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연설회를 개최하는 것을 금지함.</li> </ul> </li> <li>○ 각종집회의 제한규정중 "단합대회(정당활동은 제외한다)" 라는 문구에서 "(정당활동은 제외한다)" 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정당활동 허용사항을 별도로 규정하자는 선관위 개정안에 대하여, 이를 삭제하지 아니하기로 함</li> <li>○ 행열 및 연호행위 금지규정 중 연설회장 안에서의 연호행위는 허용</li> </ul>	

차수	일자	회의경과	비고
7	8.25 (화)	<p>&lt; 합의사항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기부행위 제한규정 보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정당과 후보자의 경우 선거운동 기간전에는 "당해선거에 관한 기부행위만 금지" 하고, 후보자등록일부터 선거일까지에는 "일체의 기부행위를 금지" 함</li> <li>- 제한되는 기부행위의 종류 추가 (입당원서 제출시, 연설회 및 정당집회 참석시 금품제공, 선거운동원 이외의 자에 대한 대가 지급 등)</li> <li>-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의례적, 직무상의 행위를 국회의원선거법과 동일하게 열거하여 규정함 (관혼상제, 단합대회 등)</li> </ul> </li> <li>○ 음식물 및 교통시설 편의제공 금지 규정 삭제</li> <li>○ 선거일 후 답례금지에 대하여 "축하, 위로, 향응" 외에 "기타의 이익" 을 추가함</li> </ul>	
8	8.26 (수)	<p>&lt; 합의사항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부재자투표(우편투표)제도 개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선관위가 설치한 우편투표소에서 우편투표자가 기표하면 이를 선관위가 확인, 날인한 후 우체국장에게 인계하여 발송</li> <li>- 법령 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우편투표자가 우편투표소에 갈 수 없는 기관, 시설에 대하여 선관위의 허가로 우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음</li> </ul> </li> </ul>	



차수	일자	회 의 경 과	비 고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격.오지등의 근무자와 신체장애.상병 기타사유로 우편투표소에 갈 수 없는 자등은 거소투표방식으로 투표하고 외봉투에 본인의 기명.날인을 하도록 함 (군인은 소속부대장의 확인인도 필요)</li> <li>- 투표소설치지역, 투표사무종사원의 자격, 투표용지, 투표구선관위원장의 사인날인등에 대하여 국회의원선거법규정과 형평을 맞춤</li> <li>○ 선거운동원에게는 일당을 주지않고 실비만 지급하기로 함</li> </ul>	
9	8.27 (목)	<p>&lt; 합의사항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투.개표 참관인의 수당을 국고부담으로 함</li> <li>○ 투표함의 인수인계 절차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개표참관인은 투표구에서 송부된 투표함의 인계인수 절차를 참관할 수 있도록 함</li> </ul> </li> <li>○ 투표소에서 투표구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용지를 100매 이내에서 미리 사인을 찍어둘 수 있도록 함</li> <li>○ 선거관리위원회의 단속권한 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선관위 위원 및 직원은 불법선전물.시설의 철거.수거.폐쇄등을 명하고 불응시 대집행을 할 수 있으며,</li> <li>-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그 중지.경고.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, 나아가 수사의뢰 및 고발도 할 수 있도록 함</li> </ul> </li> </ul>	

## 다. 정치자금법등 개정심의반

차수	일자	회 의 경 과	비 고
1	8.18 (화)	<합의사항> ○ 각당의 개정안을 심의반에 제출기로 함.	
2	8.19 (수)	○ 3당 대표회담 내용중 "선거자금"표현에 대한 해석과 정치 자금배분규정의 개정논의	
3	8.20 (목)	○ 기탁금·후원회·국고보조금제도의 논의	
4	8.22 (토)	○ 지정기탁금제도의 개선 논의 - 민자당 입장 : 지정기탁금제도의 존치주장 - 민주당 입장 : 익명쿠폰제의 도입과 지정기탁금제도의 폐지	
5	8.24 (월)	○ 지정기탁금제도의 개선 논의 - 민자당 입장 : 지정기탁금제도의 존치를 주장하고, 쿠폰제 도입에 대해서 계속 연구 - 민주당 입장 : 지정기탁금제도의 폐지, 익명쿠폰제의 도입	
6	8.25 (화)	○ 쿠폰제 도입 논의 (합의사항 없음)	
7	8.26 (수)	○ 쿠폰제 도입 논의 (합의사항 없음)	
8	8.27 (목)	○ 쿠폰제 도입 논의 (합의사항 없음) ○ 후원회의 집회모금 및 광고모금시 익명성 기부문제 논의 (합의사항 없음)	